#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2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 : 양이원영·장철민·양정숙

전혜숙・유정주・허 영

윤건영 · 남인순 · 박완주

박홍근 • 윤영찬 • 김홍걸

김정호 · 김주영 · 우원식

신정훈 • 아침(비) • 윤재갑

용혜인 · 윤미향 · 김병주

양경숙 · 황운하 · 박성준

윤준병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긴급 주민 보호 조치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등을 현장지휘센터 장의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재난 사고 발생 후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며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주민을 보 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및 관리)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사법」 제44조, 제47조 및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재난등으 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 주하는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배 포 및 관리) ① 방사선비상계 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 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약사법」 제 44조, 제47조 및 제50조에도 불 구하고 방사능재난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 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 주하는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배포 및 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